

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10월 1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시민의 건강정책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건강위원회 위원의 증원을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고,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연임에 관한 규정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내에 기획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

- (1) 위원회의 위원 수를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(안 제10조제1항)
- (2) 부위원장을 기존의 1명에서 2명으로 규정(안 제10조제2항)
- (3) 위원 구성에 있어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(안 제10조제4항)

나. 위원의 연임에 관한 조건을 신설하여 임기 중 참여 출석률이 40% 이상이고 연임 의사가 있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3조제1항)

- 다. 분과위원회의 분야를 지역보건, 시립병원, 감염병 예방, 정신보건, 건강증진 등으로 세분화 함(안 제16조)
- 라. 위원회 내에서 주요업무의 협의,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의 기능 수행하는 기획조정소위원회의 신설(안 제16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- (1) 입법예고 (2018. 8. 2. ~ 8. 22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- 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앞에 “제1장 총칙”을 삽입한다.

제9조제2항제6호 중 “국민건강증진법 제6조”를 “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6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”를 “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 중 “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”를 “「지역보건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30명”을 “5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행정 1부시장”을 “행정(1)부시장”으로, “자가 공동 위원장”을 “사람이 공동위원장”으로, “호선으로 한다.”를 “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2명으로 한다.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나머지위원”을 “시 시민건강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”으로,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6호까지”를 “제6호까지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서울특별시 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의

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“자”를 각각 “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“서울시민”을 “시민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시장은 위원 구성에 있어 거주지역, 성(性), 연령, 직업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시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위원장은”을 “공동위원장은 각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장을”을 “각자 위원장을”로, “때에”를 “때에는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1이상”을 “1 이상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으로서 임기 중 40% 이상 위원회(분과위원회, 기획조정소위원회 각 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출석하고 연임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전문”을 “지역보건, 시립병원, 감염병 예방, 정신보건, 건강증진 등 전문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,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기획조정소위원회)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조정소위원회를 두며,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회의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
2.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

② 기획조정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, 부위원장, 당연직 위원, 제16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장, 총무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, 기획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한다.

제23조제3항제3호 중 “서울특별시 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>제9조(시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(생 략)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6. <u>국민건강증진법 제6조</u>의 규정에 따른 시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</p> <p>7. <u>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</u>의 규정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시정요청대상에 관한 사항</p> <p>8. <u>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</u>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</p> <p>9. (생 략)</p> <p>③ (생 략)</p> <p>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<u>3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<u>행정1부시장</u>과 위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1장 총칙</u></p> <p>제9조(시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「<u>국민건강증진법</u>」 제6조----- -----</p> <p>7. 「<u>국민건강증진법</u>」 제7조 및 <u>같은법 시행령 제31조</u>----- ----- -----</p> <p>8. 「<u>지역보건법</u>」 제6조 및 <u>같은법 시행령 제3조</u>----- ----- -----</p> <p>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<u>50명</u> -----.</p> <p>② ----- <u>행정(1)부시장</u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<u>자</u>가 <u>공동 위원장</u>이 되며, 부위원장은 <u>호선으로 한다</u>.</p>	<p>----- <u>사</u> <u>람이 공동위원장</u>----- -- <u>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</u> <u>2명으로 한다</u>.</p>
<p>③ <u>위원 중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나머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</u>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 다만, 제2호부터 <u>제6호까지</u> 위촉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.</p>	<p>③ ----- <u>시</u> <u>시민건강국장은</u> <u>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</u> <u>위원</u>----- <u>사람</u> ----- -- . ----- <u>제6호까지</u> <u>에 따라</u> ----- ----- .</p>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서울특별시 의회</u>에서 추천하는 자 2. 시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시민 중 위원회의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<u>자</u> 3. (생략) 4. 건강 관련 시민단체, 지역보건의료단체 등에서 추천한 <u>자</u> 5. (생략) 6. 시민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<u>서울시민</u> 7. (생략)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서울특별시의회</u>----- --- 2.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사람</u>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<u>사</u> <u>람</u>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<u>시민</u> 7.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<p>④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거주지, 성(性), 연령, 직업 등을 고려하여 <u>각계각층의 시민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</p> <p>제11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<u>위원장은</u>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② 부위원장은 <u>위원장을</u>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<u>때에</u>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제12조(회의 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</p>	<p>④ 시장은 위원 구성에 있어 거주지역, 성(性), 연령, 직업 등을 고려하여 <u>각계각층의 시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<u>양성평등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제11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<u>공동위원장은 각자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각자 위원장을</u> ----- ----- 때에는 -----.</p> <p>제12조(회의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 <p>제13조(위원의 임기) ①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6조(분과위원회)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<u>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----- --- 1 이상----- ---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위원의 임기) ①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으로서 임기 중 40% 이상 위원회(분과위원회, 기획조정소위원회 각 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출석하고 연임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분과위원회) ① ----- ----- - <u>지역보건, 시립병원, 감염병 예방, 정신보건, 건강증진 등 전문</u> --.</p> <p>② <u>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,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지명하는 사람으로</u></p>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263 342 432 383"><신설></p> <p data-bbox="226 1480 794 1585">제23조(환자권리옴부즈만 구성·운영) ①·② (생략)</p> <p data-bbox="263 1615 794 1787">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p data-bbox="263 1816 497 1856">1.·2. (생략)</p> <p data-bbox="263 1886 794 1991">3. <u>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</u></p>	<p data-bbox="863 275 948 315">한다.</p> <p data-bbox="826 342 1396 383">제16조의2(기획조정소위원회) ①</p> <p data-bbox="863 412 1396 651">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조정소위원회를 두며,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 data-bbox="863 680 1396 853">1. 위원회의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</p> <p data-bbox="863 882 1396 987">2.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</p> <p data-bbox="863 1016 1396 1458">② 기획조정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, 부위원장, 당연직 위원, 제16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장, 총무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, 기획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한다.</p> <p data-bbox="826 1480 1396 1585">제23조(환자권리옴부즈만 구성·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 data-bbox="863 1615 1396 1787"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 data-bbox="863 1816 1193 1856"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 data-bbox="863 1886 1396 1991">3. <u>서울특별시의회</u>----- ---</p>

현행	개정안
4. ~ 8. (생략)	4. ~ 8.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 (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

4. 작성자

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의료사업팀 이수미(2133-7552)